

第177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 會 議 錄

(2005.3.28. ~ 3.31.)

忠清北道教育委員會



第177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 本會議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 목 차

I. 개회식 .....	249
II. 제17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251
III. 제17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259
IV. 부록	
1. 의사일정안 .....	265
2. 충청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 .....	267
3.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 .....	271
4. 학교설립계획변경안 .....	275
5. 충청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 심사보고서 .....	281
6.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85



#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5년 3월 28일 (월요일) 11시 03분

開會式順(第177回 臨時會 開會式)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폐식

(사회:의사담당 김영구)

(11시 03분 개식)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본 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 의사담당 김영구

(11시 05분 폐회)

지금부터 제17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5년 3월 28일 (월요일) 11시 05분

## 議事日程 (제1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17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충청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학교설립계획변경안
5.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건

##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2. 제17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충청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 학교설립계획변경안(교육감 제출)
6.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건(의장 제의)

(11시 05분 개의)

16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청 간부 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 ● 의장 고규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발언대로 나옴)

### ● 교육감 김천호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3월 1일 및 3월

존경하는 고규강 의장님을 비롯한 교육

[제177회-제1차 본회의]

위원님 여러분!

충북 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만물이 새빛으로 푸르름을 더해 가는 봄의 계절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반갑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최근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한 행정서비스현장 종합평가 2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어 충북교육의 위상과 자긍심을 드높였습니다.

이러한 품격행정의 성과들은 여러 교육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도 조언과 정책 대안을 훌륭하게 제시하여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난 인사발령으로 이동된 본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기획관리국장·과학실업교육과장·교육정보화과장, 단상 앞으로 나와 호명 순으로 인사함)

먼저 노재전 교육국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노 국장님은 1963년 교단에 발을 들여 놓으신 후 다양한 학교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찍이 청주교육청 전문직, 단양교육청과 청원교육청 교육과장, 가경중학교 교장, 충북고등학교 교장을 거쳐 이번

에 우리 교육청에서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강탁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신 국장은 1973년 교육행정에 몸담은 이래 청주교육대학교 서무과장,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협력담당관실, 평생학습정책과, 교원복지담당관실 및 감사관실을 거쳐 고향의 교육발전에 헌신 봉사하기 위하여 이번에 기획관리국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이어서 본청 과학실업교육과 장학관으로 근무하다가 승진 임용된 정찬구 과학실업교육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충북전산기계고등학교의 교장에서 이번에 정보화과장으로 전직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장학관으로 근무하다가 승진 임용된 전창동 초등교육과장님이 있습니다만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혁신과정 연수 관계로 이번에 참석하지 못하여 인사를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에 기회있을 때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교육국장·기획관리국장·과학실업교육과장·교육정보화과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고규강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집행청으로부터 연희지 혁신복지 담당관, 전창동 초등교육과장님, 김병연 평생교육체육과장님, 박영하 기획관리과 장님께서 지방교육행정 혁신을 위한 교육 혁신지도자 과정 특별 연수중으로 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과보고

(11시 09분)

● 의장 고규강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의사과장 발언대로 나옴)

● 의사과장 박경석

의사과장 박경석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및 안건 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5년 3월 18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교육감으로부터 교육위원회 집회요구와 동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학교설립계획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공고 제 2005-4호로 제17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의회 제출 안건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2월 23일 제1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한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 교육감소속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3월 25일 제2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각각 수정의결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중에는 충청북도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 등 세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과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고규강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177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11시 11분)

● 의장 고규강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7회 임시회 회기는 3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4일간으로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안과 같이 충청북도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실비

[제177회-제1차 본회의]

변상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학교설립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조례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겠으며, 3월 29일부터 3월 30일까지 2일간은 소위원회 활동과 의안관련 현장방문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며, 3월 31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의안건을 처리하시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제17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3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끝에 실음)

- 3. 충청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
- 4.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학교설립계획변경안

(11시 13분)

● 의장 고규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 의

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학교설립계획변경안은 같은 국 소 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계서는 나오셔서 안건별로 각각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발언대로 다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신강탁입니다.

존경하는 고규강 의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학교설립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대하여는 위원회 별로 개별 조례나 교육규칙 또는 훈령을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동 위원회 위원의 실비 변상에 대하여 통일된 규정이 요구됨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각종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건을 배부받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하며, 시험 실시 기관의 장이 위촉한 시험위원에게도 수당을 지급하고,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며, 위원에게 수당 또는 여비 이외에 위원회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가 필요한 때에는 그 실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동 조례 제정으로 인해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를 폐지하고 위원회 별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비변상 조항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교육·학예에관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별첨 2)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여비 조례를 교육위원회 소속 지방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 중 제명 및 목적에 충청북도교육위원회를 추가하고, 법제처의 법령제명 띄어쓰기 실시에 따라 법령의 본문 중에서 법령명을 인용하고 있는 법령명 앞뒤에 낫표를 사용하여 본문의 다른 부분과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별첨 3)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학교설립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제17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2006학년도 9월 및 2007학년도 학교설립계획 중 청주시 평준화 지역 일반계고등학교-가경고, 원평고, 경덕고, 산남고-4개교 중 산남고를 제외한 3개교에 대하여 학생들의 원거리 배정 해소, 통학편의 제공 등을 위하여 학교설립 위치 및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가칭 가경고등학교는 당초 충북공공의부지 일부와 사유지를 매입하여 설립하려

[제177회-제1차 본회의]

고 하였으나 인근 지역에 가칭 경덕고등학교 설립계획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고등학교가 없는 청주 북서부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원거리 배정을 해소하고 통학편의를 제공하고자 청주 봉명·신봉지구 내로 위치를 변경하고 학교명을 가칭 송절고등학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가칭 송절고등학교 부지는 청주시에서 생산 및 유통업무 시설로 분양 후 계약해지된 부지로 앞으로 학교시설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받아 학교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가칭 원평고등학교는 당초 학교용지 남쪽의 농로를 진입로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개교 후에 학생들의 통학불편 및 학교 건축 과정에서의 민원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어 충북고 사거리와 방서사거리 사이 6차선 도로에서 학교로 연결된 진입로를 개설하여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제공하고자 위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진입로로 사용될 부지의 소유자는 청주시로 되어 있어 부지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칭 경덕고등학교는 학교용지 예정지 중 일부분이 MBC 사옥 부지와 중복되어 위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강서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가칭 경덕고등학교는 2008년 3월에 개교 예정인 가칭 석남초등학교와 가칭 강서중학교의

도로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 조 : 학교설립계획변경안(별첨 4)

(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학교설립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고규강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 중 학교설립계획변경안은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과 사전 협의 등을 거쳐 검토하신 후에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 의견

(11시 21분)

● 의장 고규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 의견을 상정합니다.

[제177회-제1차 본회의]

금번 회기에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조례심사소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충청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즉시 조례

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3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회의록 서명위원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7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성영용 위원님과 송대헌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17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0 출석위원 : 6명

의장 고규강,

위원 성영용, 송대헌, 이기수, 이상일, 진옥경.

0 출석공무원 : 11명

교육감 김천호,

부교육감 김용호,

교육국장 노재전,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공보감사담당관 김장한,

중등교육과장 연준,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

교육정보화과장 박연태,

총무과장 이상기,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시설과장 안세열.

※ 부 록

- ▶ 의사일정안(별첨 1)
- ▶ 충청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별첨 2)
-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별첨 3)
- ▶ 학교설립계획변경안(별첨 4)





#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5년 3월 31일 (목요일) 11시 01분

## 議事日程 (제1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학교설립계획변경안

## 附議된 案件

1. 충청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교육감 제출)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 학교설립계획변경안(교육감 제출)

(11시 01분 개의)

### ● 의장 고규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집행청으로부터 연희지 혁신복지담당관님, 전창동 초등교육과장님, 김병연 평생교육체육과장님, 박영하 기획관리과장님께서 지방교육행정 혁신을 위한 교육혁신지도자 과정 특별 연수중으로 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충청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02분)

### ● 의장 고규강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

[제177회-제2차 본회의]

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소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 송대헌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안건별로 각각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발언대로 다음)

●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송대헌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송대헌 교육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충청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난 3월 18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3월 28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2차에 거쳐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은 이미 지난 제1

차 본회의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경우 조례 제정과 관련한 자료가 미흡하여 충분한 심의의 어려움이 있었고, 제정 이유에서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실비 변상에 대하여 통일된 규정의 제정이 요구됨에 따라 각종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는 방식에 있어 부칙으로 기존 조례의 삭제 여부를 좀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금번 회기 중에 심의를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 심사보고서(별첨 5)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은 이미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소속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여비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제명을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에서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로

변경하여 여비 적용 범위를 명확히하였고, 조례안 제1조 중 충청북도교육감을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으로 조문 내용을 변경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소속 지방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 중 공무원여비규정 문구 앞뒤에 낫표를 삽입하여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 개정취지 및 내용이 전면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별첨 6)  
(끝에 실음)

끝으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심도있는 의안심의와 적극적으로 소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교육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의석으로 돌아감)

● 의장 고규강

송대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대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

학에에관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은 조례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대로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금번 회기 중에 심의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 대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신중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안건이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소위원회의 심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학교설립계획변경안

(11시 10분)

● 의장 고규강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3항 학교설립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3월 30일 직접 현장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였고, 학교설립변경 사유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질의 확인하신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학교설립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학교설립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위원님들의 당부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희망찬 충북교육 구현을 위한 교육시책 추진에 온 정성을 다하는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상정된 학교설립계획변경안 중 가칭 송절고등학교의 경우 지역별 편중과

학생들의 원거리 배정 해소, 통학편의 제공 등을 위하여 학교설립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지 확보 등을 위하여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가 큰 점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격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친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 협의 없이 변경계획을 수립한 것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중대한 업무를 추진할 경우에는 좀더 신중을 기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 및 제17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폐회)

0 출석위원 : 7명

의장 고규강, 부의장 김남훈,  
위원 성영용, 송대현, 이기수, 이상일, 진옥경.

0 출석공무원 : 11명

교육감 김천호, 부교육감 김용호, 교육국장 노재전,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공보감사담당관 김장한, 중등교육과장 연준,  
과학실업교육과장 전찬구, 교육정보화과장 박연태, 총무과장 이상기,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시설과장 안세열.


※ 부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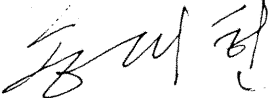
- ▶ 충청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 심사보고서(별첨 5)
-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별첨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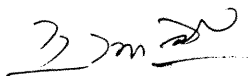
제17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5. 4. .

의 장 고 규 강 

위 원 성 영 용 

위 원 송 대 헌 

의사국장 조 계 환 

(별첨 1)

# 議 事 日 程 (案)

第177回 忠淸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2005. 3. 28. ~ 3. 31. (4日間)

日 時	附 議 案 件	備 考
3월 28일(월) (11:00)	<input type="checkbox"/> 개 회 식 <b>[ 제1차 본회의 ]</b>  1. 제17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회 기 : 2005. 3. 28. ~ 3. 31.(4일간) 2.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학교설립계획변경안 5.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input type="checkbox"/> 소위원회활동 · 조례심사소위원회	제안설명 " "
3월 29일(화) ~ 3월 30일(수)	<input type="checkbox"/> 소위원회활동 · 조례심사소위원회  <input type="checkbox"/> 의안관련 현장방문	본회의 휴 회
3월 31일(목) (11:00)	<b>[ 제2차 본회의 ]</b>  1.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학교설립계획변경안  <input type="checkbox"/> 산 회 <input type="checkbox"/> 폐 회	





(별첨 2)

의안번호	제 179 ~ 1 호
의결 연월일	2005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연월일	2005년 3월 18일

#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05. .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 제정이유

-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대하여는 위원회별로 개별 조례나 교육규칙 또는 훈령을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대하여 통일된 규정의 제정이 요구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함.(안 제3조제1항)
- 나.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건을 배부 받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함.(안 제3조제2항)
- 다.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위촉한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함.(안 제3조제3항)
- 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를 지급함.(안 제4조)
- 마. 위원에게 수당 또는 여비 이외에 위원회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가 필요한 때에는 그 실비를 지급함(안 제5조)
- 바.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를 폐지하고, 위원회별로 개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의 수당 등 실비변상 조항을 개정함.(부칙안 제2조 및 제3조)

## □ 제정조례안 : 붙 임

##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안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및 사이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교육규칙 및 긴급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된 각종 위원회로 한다.

②각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수당) ①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직접 자기 소관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건을 배부 받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위촉한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여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지방공무원 여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교육소청심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2. 기타 각종위원회 위원 :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제5조(실비변상) 위원에게 수당 또는 여비 이외에 위원회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가 필요한 때에는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비용 변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중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충청북도단재교육상조례중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중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실비변상) 심의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충청북도평생교육협의회 설치조례중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실비변상)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중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실비변상) 심의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별첨 3)

의안번호	제 117 ~ 2호
의결 연월일	2005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연월일	2005년 3월 18일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05. . .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개정이유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소속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여비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충청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여비조례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소속 지방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 제명 및 목적에 충청북도교육위원회를 추가함.(안 제1조)

### 개정조례안 : 붙임

###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여비조례”로 한다.

제1조중 “충청북도교육감”을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으로 한다.

제3조중 “공무원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p><u>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u></p>	<p><u>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충청북도교육감</u> 소속기관의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준용)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u>공무원여비규정</u>을 준용한다.</p>	<p>제1조(목적) . . . . . <u>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u> . . . . .</p> <p>. . . . .</p> <p>제3조(준용) . . . . . 「<u>공무원여비규정</u>」 . . . . .</p>



(별첨 4)

의안번호	제 111 ~ 121 호
의결 연월일	2005. . . (제 회)

## 학교설립계획변경안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05. 3. 18.

# 학교설립계획변경안

의안 번호	199 ~ 3
----------	---------

제출연월일 : 2005. 3. 18.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관 련 부 서 : 기획관리과

## I. 학교설립계획 변경사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제17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06학년도 9월 및 '07학년도 학교 설립계획안중 (가칭)가경고등학교, (가칭)원평고등학교와 (가칭)경덕고등학교를 학생들의 원거리 배정 해소, 통학편의 제공 등을 위하여 학교설립 위치 및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 II. 주요골자

2007학년도. 청주시 평준화지역 일반계고등학교 설립계획(가경고, 원평고, 경덕고, 산남고 : 2007. 3월 개교) 중에서

- (가칭)가경고등학교는 고등학교가 없는 청주북서부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원거리 배정을 해소하고자 청주 봉명·신봉지구내로 위치를 변경하고 학교명을 (가칭)송절고등학교로 변경하고자 함.(※ 현재 용도인 “생산 및 유통업무 시설”을 “학교시설”로 변경하여 학교 신설)
- (가칭)원평고등학교는 당초 학교용지 남쪽의 농로를 진입로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충북고사거리↔방서사거리 6차선 도로에서 학교로 연결된 진입로를 개설하여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제공하고자 위치를 변경하고자 함
- (가칭) 경덕고등학교는 학교용지 예정지중 일부분이 MBC 사옥부지와 중복되어 위치를 변경하고자 함.

### III. 2007. 학교설립계획(청주시 일반계고) 변경안

#### 가. 학교설립계획 변경안

당초안			변경안		
명 칭	위 치	면적	명 칭	위 치	
(가칭) 가경고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687번지 일원 (687번지의외 5필지)	16,900m <sup>2</sup>	(가칭) 송절고	청주시 흥덕구 봉명·신봉지구 (봉명동 2448번지)	19,189.8m <sup>2</sup> (2,289.8 m <sup>2</sup> 증)
(가칭) 원평고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565번지 일원 (565번지의외 7필지)	15,625 m <sup>2</sup>	(가칭) 원평고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529번지 일원	16,414m <sup>2</sup> (789m <sup>2</sup> 증)
(가칭) 경덕고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산46-40번지 일원 (산46-40번지의외 6필지)	16,900m <sup>2</sup>	(가칭) 경덕고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653번지 일원	16,900m <sup>2</sup>

#### 나. 설립계획 변경에 따른 부지매입비 추가소요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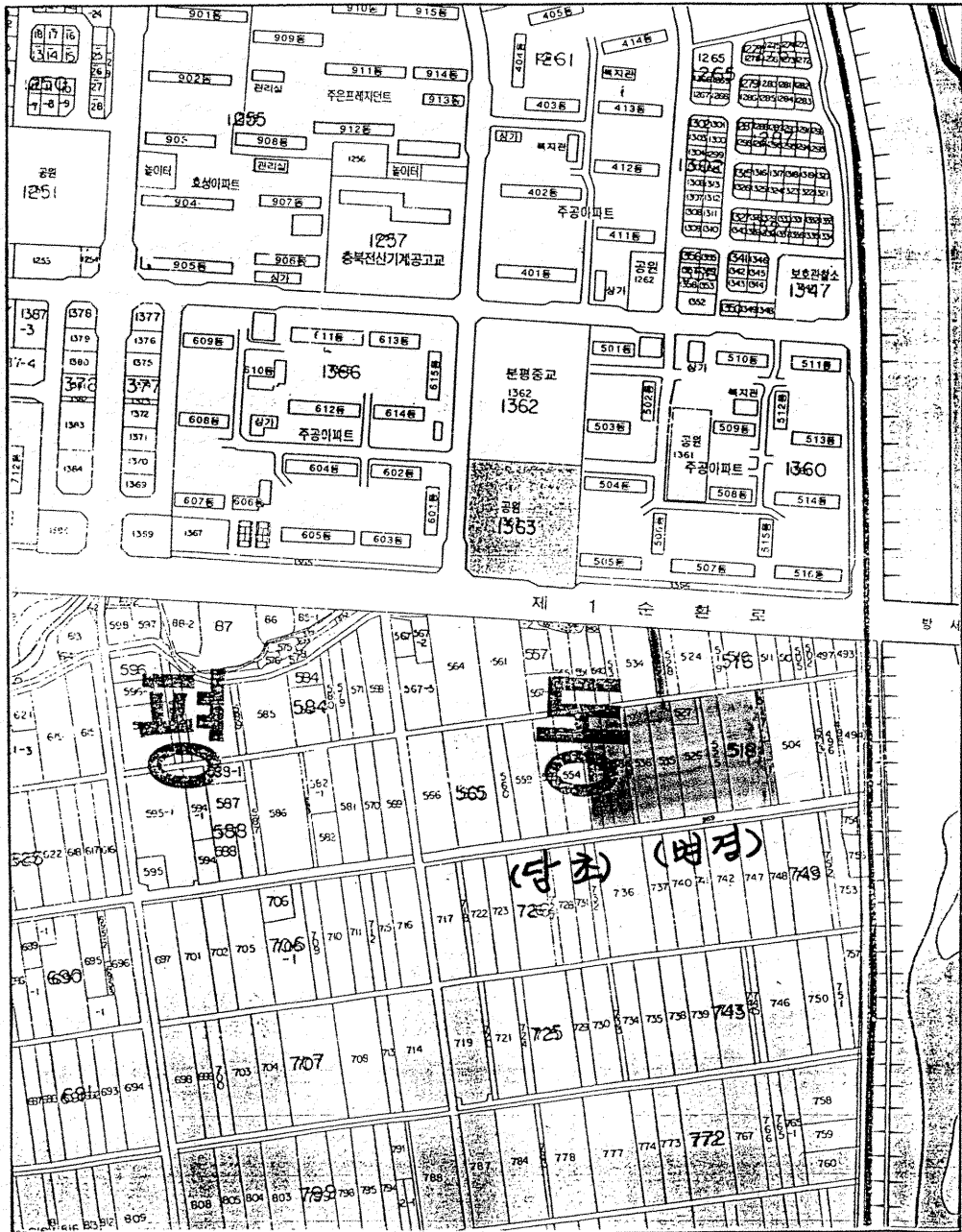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학교명 (가칭)	당 초		변 경		추가소요액		비 고
	부지(m <sup>2</sup> )	금액	부지(m <sup>2</sup> )	금액	부지(m <sup>2</sup> )	금액	
송절고 (가경고)	16,900	2,638	19,189.8	8,559	2,289.8	5,921	당초 가경고는 충북공고 부지 일부 사용
원평고	15,625	5,672	16,414	5,959	789	287	
계	32,525	8,310	35,603.8	14,518	3,078.8	6,208	

#### 다. 참고사항 : 학교 위치도 3부(붙임)



# (가칭) 원평고등학교 설립 위치도



# (가칭) 경덕고등학교 설립 위치도



(별첨 5)  
(제177회 임시회)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05. 3. 31.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

##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5년 3월 18일, 충청북도교육감
- 나. 상정 및 회부일자 : 2005년 3월 28일, 제1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다. 소위원회 심사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5년 3월 28일)
  -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5년 3월 29일)

###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총무과장 이상기)

#### 가. 제안이유

-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대하여는 위원회별로 개별 조례나 교육규칙 또는 훈령을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의 위원의 실비변상에 대하여 통일된 규정의 제정이 요구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함. (안 제3조 제1항)
-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건을 배부 받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건 심의 수당을 지급함.  
(안 제3조 제2항)
-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위촉한 출제위원 및 시험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함. (안 제3조 제3항)
-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를 지급함. (안 제4조)



- 위원에게 수당 또는 여비 이외에 위원회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가 필요한 때에는 그 실비를 지급함. (안 제5조)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교육 소청 심사위원회 위원 비용 변상 조례를 폐지하고, 위원회별로 개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의 수당 등 실비변상 조항을 개정함. (부칙안 제2조 및 제3조)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5. 심사보고 주요내용

- 조례 제정과 관련한 자료가 미흡하여 충분한 심의에 어려움이 있었고, 제정이유에서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실비 변상에 대하여 통일된 규정의 제정이 요구됨에 따라,
- 각종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는 방식에 있어 부칙으로 기존 조례의 삭제 여부를 좀 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금번 회기 중에 심의를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6. 심사결과 : 보류

7.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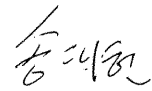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05. 3. 31.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송대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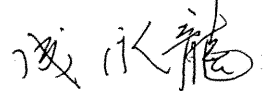
간사

이상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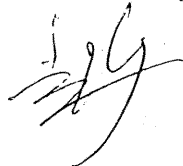


위원

성영용



이기수



진옥경

진옥경

(별첨 6)

(제177회 임시회)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05. 3. 31.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5년 3월 18일, 충청북도교육감
- 나. 상정 및 회부일자 : 2005년 3월 28일, 제1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다. 소위원회 심사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5년 3월 28일)
  -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5년 3월 29일)

###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총무과장 이상기)

#### 가. 제안이유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소속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여비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충청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여비조례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소속 지방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중 제명 및 목적에 충청북도교육위원회를 추가함. (안 제1조)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 5. 심사보고 주요내용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소속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여비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제명을,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에서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변경하여 여비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 조례안 제1조 중 “충청북도교육감”을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으로 조문 내용을 변경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소속 지방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조례안 제3조 중 “공무원여비규정” 문구 앞·뒤에 낫표 (「 」)를 삽입하여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일부개정 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개정 취지 및 내용이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05. 3. 31.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송대현

송대현

간사

이상일

이상일

위원

성영용

성영용

이기수

이기수

진옥경

진옥경

第177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 條例審查小委員會 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 목 차

I. 제17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293

II. 제17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297

## III. 부 록

1.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319



# 條例審查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5년 3월 28일 (월요일) 11시 28분

## 議事日程 (제177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 附議된 案件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11시 28분 개회)

그러면 바로 위원장 선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9조로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위원장선출의건

### ●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헌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177회-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수 위원

송대헌 위원을 추천합니다.

● 성영용 위원

조례는 두 번 하셨네.

이기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헌

순위 표에 의해서 제가 위원장으로 추대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추대되는 것에 대해서 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인이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조례심사 위원장으로서 일을 잘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견

(11시 31분)

● 위원장 송대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견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방금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이 없으시면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일 위원님이 차례인 것 같습니다.

간사로 이상일 위원님을 지명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상일 위원님을 간사로 선출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일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단히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이상일

이상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도와서 소임을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견

(11시 34분)

● 위원장 송대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결정의견을 상정합니다.

편의상 의사일정안을 본 위원장이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소위원회 활동은 오늘과 내일 2일간으로 하여 충청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을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수 위원

위원장님 내일 학교설립에 대한 교육위원 현지 방문이 있는데, 조례는 모레 하는 겁니까, 내일 하는 겁니까?

● 성영용 위원

조례는 내일이고 모레가 현장방문이죠.

● 이기수 위원

모레가 현장방문이에요.

● 위원장 송대현

내일 조례는 2시로 하는 것으로, 모레가 현장 방문이 되겠습니다.

● 이기수 위원

이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송대현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본 위원장이 제안한 바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끝에 실음)

그럼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3월 29일 14시 제2차 소위원회에서 충청북도 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0 출석위원 : 5명

위원장 송대현, 간사 이상일,  
위원 성영용, 이기수, 진옥경.

0 출석공무원 : 1명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 부 록

▶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별첨 1)



# 條例審查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5년 3월 29일 (화요일) 13시 58분

## 議事日程 (제177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충청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 附議된 案件

1. 충청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시 58분 개회)

### ● 위원장 송대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상정된 안건별로 주관과장 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위원님들의 질 의와 관계관의 답변을 들으신 후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소위 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충청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 회실비변상조례안

### ● 위원장 송대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학예에 관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을 상정합 니다.

먼저 본 조례안 작성의 주관과장인 총 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 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총무과장 이상기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충청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실 비변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제177회-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제정이유는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대하여는 위원회별로 개별 조례나 교육규칙 또는 훈령으로 제정하여 각각 적용하여 왔으나, 이를 통일된 규정으로 적용하여 각종 위원회 운영이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운영할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각종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건을 배부 받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하며, 다.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위촉한 시험위원에게도 수당을 지급하고, 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며, 마. 위원에게 수당 또는 여비 이외에 위원회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가 필요한 때에는 그 실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 비용변상조례를 폐지하고,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7개 위원회의 실비변상 조항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로 개정하여 내용을 통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2안이 되겠습니다. 제2안으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대헌

그 부분은 조금 후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상기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대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위원님의 신청 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기수 위원

이기수 위원입니다.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안을 각 위원회별 조례로 되어 있는데 그 조례상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전부 빼고서 한쪽에다가 몰아 갖고서 이걸 하는 거죠.

● 총무과장 이상기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이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조례로 여덟 건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실비변상조례로 해서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수당이나 여비 기타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례나 또는 규칙에 의해서 통일되지 않고 교육감 밑에 있는 각종 운영되는 그러한 실비변상이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번에 이것을 묶어서 실비위원회 위원에게 실비변상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여덟가지 위원회 조례로 되어 있는 조항에 똑같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수당 또 그 다음에 여비 또 그 다음에 심의수당 또 그 다음에 필요한 기타 경비 등을 지급하도록 통일을 해냈습니다.

그 전에는 각종 조례에 실비변상 조항이 들어가 있는 조항도 있고 수당만 들어가 있는 조항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수당과 여비만 들어가 있는 조항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심의 안건수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타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라는 말이 안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한데 묶어서 근거조항을 똑같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똑같

이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통일되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이기수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말입니다.

지금 제3조 부칙 3조에 본다면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끔 했고 또 충청북도단체교육상조례에도 거기 수당을 주고 또 실비변상조례도 있고 그 다음에 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에도 주게끔 되어 있고 해 갖고서 쪽 본다면 한 7가지 위원회 수당을 주어야 된다 이렇게 나열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들이 각 위원회의 조례 중에서 위원들한테는 회의비를 줄 수 있다는 이런 조항들이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전부 뽑아 갖고 한데다 묶어 갖고 그걸 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 총무과장 이상기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이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곱 가지 위원회의 실비변상조례를 전부 빼는 게 아니고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곱 가지 위원회에 보면은 각각 틀리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예를 들면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실비변상에 보면 제8

[제177회-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조 수당 중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충청북도 단재교육상조례 제10조 실비변상조항에 보면 교육감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구구 각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조항들을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실비변상조례를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건 저희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 전부 실비변상조항을 통일시켜 주는 것이죠.

● 이기수 위원

그렇게 되면 조례의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나 단재교육상 심사위원회나 또는 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나 각각의 조례안에 들어 있는 각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한테는 실비 범위 안에서 회의비를 줄 수 있다 하는 조항들을 삭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대로 두고서 이걸 만드는 겁니까?

● 총무과장 이상기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요번 개별 조례를 하나 만

들어 놓은 것은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이렇게 실비변상조항은 각 조례마다 여덟 가지 속에 실비변상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이걸 통일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요번에 일부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요 조항을 만들어서 위원에게는 이렇게 수당 그 다음에 여비, 기타 안건 심의수당, 그 다음에 시험위원에게 주는 수당 이렇게 해서 근거조항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각 개별적인 실비변상조례는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전체가 통일이 되고 그것이 근거가 되는 것이죠.

● 이기수 위원

이것은 만들어 놓고 각 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안에 들어가 있는 회의비를 줄 수 있다는 걸 그대로 준다는 얘기인가요? 수정한다는 얘기인가요?

● 총무과장 이상기

수정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님이 잘 말씀을 이해를 제가 설명을 못 드려서 그런데 여기 보시면.....

● 위원장 송대헌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실무자가 답변해

도 돼요. 실무자가 보충답변 드려도 좋습니다.

● **총무과장 이상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별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비변상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고, 여덟 가지 조례의 실비변상조항 난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라고 실비변상조항을 그렇게 통일되게 고치는 것입니다.

● **이기수 위원**

이게 확정됨과 동시에 여기에 맞추어 갖고서 각 위원회에서 수당을 줄 수 있는 조례의 항목을 말합니다. 몇 조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여기에 맞추어 갖고 고쳐 놓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게 복잡해지는 얘기에요.

왜냐 지금 7개 위원회에 대한 조례를 근간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따라서 그 안에 있는 수당지급에 대한 조례를 바꾸어 나가는 얘기인데, 그러면 위원회를 만들 때마다 여기도 무슨 위원회라고 해 갖고 이 조례는 말합니다. 위원회가 하나 생길 때마다 계속 조례를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아니 여기다 첨가해 줘야 되니까 아니

그대로 준다고 해도 이게 뭐냐 하면 여기 B라는 위원회를 다시 필요에 따라서 만들었다 하면 그 조례를 만든 데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써져 있고, 이 조례도 거기다 첨부해 갖고서 이와 같이 넣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총무과장 이상기**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지금은 요거를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안을 통일되게 규정을 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요번에 관련되는 여덟 가지 위원회를 통일되게 수정해 놓으면 끝나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다음에 예를 들면 A라는 위원회가 또 나왔을 때는 거기에도 실비변상조례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도 나중에 실비변상조례안에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 그 조항만 넣어 놓으면 이거는 상관없죠.

여기에서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안을 이렇게 넣어 놓으면 그거는 뒤에서 통일되게 할 수가 있죠. 이걸 고치는 게 아니라.....

● **이기수 위원**

그렇게 된다면 여기 교육청공직자윤리 위원회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해야 된다는 실비변상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수당과 여비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또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그 내용이 아닙니까? 이것이 이중으로 이렇게 되는 애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한 가지로 전부 각 위원회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끔 조례의 조항이 들어가 있으면 말입니다. 그것을 손질해 갖고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각 위원회가 상당히 고급인력이나 특수인력을 참여하도록 해 갖고서 다양성을 적용할 수 있는 애기인데, 이건 원래 위원회 속에 있는 걸 여기다 또 하나 빼 갖고서 통일한다 걸 이렇게 만들어 놓을 필요가 과연 있는가, 만약에 여기 같이 하나가 열거돼 갖고 7개 위원회가 됐다면 이걸 맞춰서 한다면 여덟 번째 생기는 위원회가 있다면 교육위원회에서 또 여기다 기재하고 거기다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이중적인 일이 계속 반복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는 조례를 만들 경우에는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실비변상을 하도록 다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규정이 현재는 위원회별로 각각 달리 정해져 있어 가지고 어떤 위원회는 수당이 많이 나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어떤 위원회는 적게 지급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하나로 만들어서 모든 위원회에 대해서는 통일되게 어떤 실비변상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각종 다른 어떤 새로운 위원회가 생겨 가지고 조례를 만들 경우에는 이 규정을 지금 만들고자 하는 실비변상조례에 근거해서 실비변상 하도록 통일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라든가 어떤 형평성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거든요.

● 이기수 위원

실비변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위원회도 아마 그럴 겁니다. 위원회에서 특수재능을 가졌다든지 고급인력 위원에게는 강의료를 더 주는 것 말이에요. 똑같이 주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것도 뭔가 천편일률적으로 획일화시킨다든지 하면 이게 상당히 그것도 문제가 있는 애기입니다. 결국은 잣대를 어디다 놓고 재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애기죠.

위원회에서 그냥 별 특수한 자격이나 지식을 갖지 않은 사람이나 특수한 분야에 종사해 갖고서 하는 분야에 대해서 상응한 각 위원회별로 해 갖고서 차등 지급해도 괜찮은 문제지, 과다하게 지급 안한다면 그걸 전부 획일화한다는 얘기는 그건 더욱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애기입니다.

지금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든지 판사나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하고 그냥 아무런 자격이 없는 분들이 위원회에 참석한 거하고 똑같이 잣대를 매겨서 획일화시킨다는 얘기는 공평성을 기하는 것 같으면서도 거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총무과장 이상기**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기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각종 위원회가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는 검사도 들어갈 수도 있고 법관도 들어갈 수도 있고 대학교수도 들어갈 수 있고 변호사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일반학부모, 일반인 등등 물론 위원회마다 위원들의 구성이 천차만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급인력부터 차이가 나죠.

그래서 차이나는 것에 따라서 차등 수당이나 각종 일비를 지급을 해야되지 않느냐 똑같이 지급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거는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안이 그런 금액을 통일시키는 것이 아니고 각종 수당이나 실비변상조례를 통일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다만 교육감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가 어떤 조례안에서는 일비도 안주고 또 그 다음에 실비변상도 안해 주고 여비도 안주고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각양각색 이어서, 요런 것을 갖다가 이렇게 실비변상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위원에게는 그런 예산의 편성단계에 의해서 지금 말하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마는 교육소청심사위원회나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에게는 3급 공무원에 준 하는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기타 위원회는 4급 공무원에 준 하는 여비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차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 조례는 어떤 금액을 갖다가 똑같이 통일되어서 8만원이면 8만원 똑같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실비변상조례의 목적은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편성지침에 의해서 수당, 여비 또 안건, 위원장이 지시해서 안건을 심의하는 보고하는 사항에 대한 어떤 것인데 그 사항, 그 다음에 기타 여비와 수당 이외에 활동하기 위해서 어떤 기타 경비가 들어갔다 소요됐다 하면 그것을 지급하라는 요 규정을 통일되게 하는 것이 그 수당이나 여비를 통일되게 주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염려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 **이기수 위원**

이기수 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국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또 차이가 나는 얘기이예요.

관리국장님은 똑같이 주기 위해 갖고 먼저 골간을 만들어 갖고서 했다는 그런 얘기고, 제가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하면 각종 위원회 속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에 조항이 들어가 있는 얘기인데 그걸 조항마다 다 조례에 들어가 있는 얘기인데, 이걸 별도로 하나 뽑아 갖고 여기도 하나 만들어 놔 갖고서 통일한다 해 놓고 그쪽에서 조례도 여기에 맞추어 가지고 만들어 놔다든지 하면, 여기 체계로 봐 갖고서 뭐냐 하면 각 위원회별로 전부 나열해 놓고서 줄 수 있다,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나머지 위원회가 생길 때마다 뒤에다가 이놈도 고쳐야 되고 거기도 또 하나 해야되고 이게 불편하니까 솔직히 이게 없는 게 낫고 각 위원회 조례를 말합니다. 다 이렇게 해 갖고서 여기에 부합하게끔 그 조항을 하나만 고쳐놓으면 끝날 걸, 앞으로 이걸 해 놓든지 하면 이놈 조례 고치고 거기서 또 만들고 해 갖고서, 항시 조례를 개정하는데 바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갖고 별도로 이런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위원장 송대현

이기수 위원님 일단 문제제기를 했으니까 됐고, 성영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성영용 위원

교육위원 성영용입니다.

굉장히 좋은 안을 내서 이게 사실 하나의 실비조례에 대한 모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각 위원회 실비변상에 대해서 주는 데도 있고 안주는 데도 있고 적게 주는 데도 있고 어느 정도 기준 점을 마련해서 모법 삼아서 이렇게 해 주려는 의도는 알겠는데요. 요걸 심의하는데 우선 이런 부분이 부족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로 정해서 지금 하는 각종 위원회나 또 교육규칙으로 정한 위원회나 또 훈령으로 해서 적용하고 있는 위원회나 이 명단이 쪽 나와서, 거기에서 어떤 위원회는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게 어떻게 하고 있다, 또 실비변상을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걸 어떻게 안해 주고 있다, 그런 걸 해 주시면 제가 우리 각 위원님들께서 심의하기 굉장히 쉬운데 막상 조례안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상당히 판단하기가 힘이 듭니다.

또 이로 인해서 부대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그것도 같이 나타내 주시고, 이 조례를 만듬으로 해서 지금 위원 비용변상조례안을 폐지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얘기해 주셔야지 여기서 판단을 쉽게 해서 총무과라든지 우리 관리

국에서 원하는 방향, 또 우리가 이것이 충북교육에 여비나 실비나 위원회 여러 가지 변상관계를 정확하게 잘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조례의 경우에도 여덟 건의 위원회가 적용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각 위원회별로 있는 내역, 그런 부분 나와서 하면 굉장히 판단하고 이 안건을 심의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먼저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질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이상기**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성영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수정하거나 제정할 때는 그런 자료를 충분히 드려서 납득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요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각 조례마다 실비변상조항은 문구가 간단하게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간단하게 한 두 줄만 명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비한 점을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안에 목적과 적용과 수당, 여비, 실비변상 등등 우리가 상세히 넣어 놓고, 거기에 의해서

앞으로 각종 위원회에 따르는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안에 의해서 각종 실비변상을 하도록 한 두 개만 집어넣으면 그것이 모범이 되고 통일성 있고 일관성이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것이 제정됨에 따라서 폐지되는 조항은 우리가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례는 저희들이 폐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이기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각종 위원회에 그냥 요런 사항만 집어넣으면 되지 않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그렇게 해도 상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이 적용부터 전부 일목요연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범위와 지급할 수 있는 범위를 우리가 약 2,3,4조에 걸쳐서 넣어놨기 때문에 거기처럼 통일된 규정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송대헌**

진옥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진옥경 위원**

일부 성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요약 자료를 받았고, 여기에는 신규조례에 대한 대조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리 8개의 위원회라고 지금 위원님들도 모르고 여기서 총무과에서도 7개라느니 8개라느니 정확

하계 8개입니다.

● 총무과장 이상기

그것은 하나가 폐지되어 7개가 되는 겁니다.

● 진옥경 위원

뭐가 폐지됐습니까?

● 총무과장 이상기

8개입니다. 아까 8개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 진옥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지금 저희들이 알지도 못하고 이거를 소관 부서에서조차 모르는 조례를 저희들이 통과시키게 생겼습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어떻게 해서 그 구 조례문이 나와 있지 않는 새로운 어떤 조례안만이 여기에 나와 있던 말씀입니까?

그리고 이 개정이유이라는 것이 지금 통일된 규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공무원의 어떤 출석수당을 여기에 적용시키기 위한 하나의 조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자료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공무원들은 조례에 위원회에 참석해도 적용을 받지 않았었죠. 그러니까 수당을 전혀 받지 않았었는데 지금 여기 개정안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면 제3조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

이라 해서 이것을 통틀어서 이야기하고 있고, 다만 공무원인 경우 직접 자기 소관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하여서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자기 소관사무냐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일이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부분들을 지금 여기에 넣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게 커다란 변동사항인데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타 시·도에서 지금 무슨 설명자료에서 보면 6개인가 6개 시·도가 거기에 아홉 곳인데요. 타 시·도 조례를 제정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제정했는지에 대한 자료도 지금 없고, 그리고 제가 이것을 각 위원회를 구성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운영실적을 자료를 요구했는데 8개의 해당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6개만 저한테 지금 그 자료를 주셨네요. 환경정화위원회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 관련해서는 구성도 없고 또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관련한 위원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전혀 받은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자료도 불충분하고 설명도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조례안을 심의할 수 있다는 말인지 저로서는 정말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



상입니다.

● **위원장 송대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간사 이상일**

이상일 교육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을 들었는데 저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제정한 제정이유에 말이지요.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대하여 통일된 규정의 제정이 요구됨에 따라 이 문구를 보면 말이지요. 각종 위원회의 수당이 통일되는 것 같은 느낌을 줘요.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지요.

지금 소청심사위원회는 8만원으로 현재 되어 있고 아마 그 밑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8만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데 지금 현재는 위원회별로 8만원, 5만원 적게는 3만원 이렇게 주는 건데 결국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실비가 동일하게 지급된다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지요. 그렇죠.

앞으로 이게 제정이 되더라도 예산범위 안에서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만 만드는 거지 위원회별로 실비가 같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제정된 후에도 어느 정도 위원회별로 실비의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걸로 아는데 이걸 총괄 조정부서는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예산을 부서마다 요구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느 위원회는 얼마 주고 얼마 준다는 게 말하는 부서에 따라서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걸 조정하는 부서가 어디가 되는 거죠?

● **총무과장 이상기**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이상일 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누어 드린 수당비교표를 보시면 금액이 딱 하나 나온 것이 한 가지 소청심사위원회 비용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수당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은 각 해당 부서에서 지침에 의해서 7만원, 5만원 거기 성격에 따라서 수당 액수가 틀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정해서 예산 부서에서 나중에 같이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거는 어떤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 부서에서 요것은 단가를 많고 적음에 따라,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교육부에서 별도의 어떤 지침을 내려와서 요거는 8만원으로 규정이 됐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야 되고 그렇지 않고 규정이 액수

가 정해지지 않는 수당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타부서와 경중을 따져서 확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거는 예산 부서에서 통일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금액의 편중에 따라서 8만원이 될 수도 있고 5만원이 될 수도 있고 6만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간사 이상일**

그런데 한 가지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중에서 교육소청심사위원회하고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은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예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타 각종 위원회 위원은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우리 교육위원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교육위원이 들어가 있으면 교육위원은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교육위원이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나가실 생각이십니까?

● **총무과장 이상기**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지금 타 시·도에서도 보면은 교육소청심사위원과 행정심판위원 여기는 지방공무원법이라든지 행정심판법에 의해서 거기 위원들은 국가공무원 그러니까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제2에 보면 특1호하고 2호하고 3호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육소청심사위원회는 변호사라든지 법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학교수, 부교수 이상 여비규정에 제2호로 되어 있고 3급으로 그래서 거기에 넣어 놓고, 그 다음에 기타는 위원이 4급에 상당하는 여비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실비변상도 그런 조항을 맞춥니다.

교육위원님들은 교육위원님들의 여비규정에 우리 교육위원회 여비실비 개정하고 틀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를 행자부에서 그렇게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요거는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간사 이상일**

이거는 이거하고 별개문제라고 하지만 차후에 나오겠지만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우리 교육위원이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직에 가려면 그 위원회는 추천을 안하는 게 옳다고 봐요. 4급 공무원 예우를 교육위원들 받으려면 그 위원회는 추천 안받아가는 게 낫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그런 위원회를 우리 교육위원

을 멤버로 넣지 말아야지 지금 교장선생님들이 3급 대우 받죠.

● **총무과장 이상기**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지금 교육위원님들은 공무원으로 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간사 이상일**

안하는데 옛날에도 국회의원을 장관급으로 하느냐 차관급으로 하느냐에 따라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교장선생님들이 아마 여비는 3급 여비를 받아요. 3급 여비를 받는데 우리 교육위원들은 4급 여비를 준다면 이런 위원회는 추천을 안해야 되고 우리가 안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대헌**

이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기수 위원**

이기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안에서 1조, 2조, 3조, 4조는 실비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와 그 외 심의에 대한 제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러한 근거를 마련한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뒤에 부칙에서 보면 말입니다. 뭐냐하면 각 조례 중에 들어간 조문을 수정할 걸로 해 갖고서 위원회 8개

를 나열했습니다. 부칙에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 우리 도교육청 산하에 위원회가 전부 몇 개나 있는 겁니까? 지금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교육청 산하에는 41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법정위원회는 33개가 있고 비법정위원회는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4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러면 지금 말입니다. 41개중에서 법정이 33개 위원회, 비법정이 8개면 그 법정위원회는 상응한 수당을 줄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거기는 그러면 그런 조항 되어 갖고 수당을 주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부칙에 8개 위원회만 국한해 갖고 명시해 갖고서 줄 수 있고 고친다, 고친다 이렇게 했으면 나머지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위원회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 이런 식으로 한다면 33개중에서 수당을 줄 수 있다든지 여비를 더 줄 수 있는 위원회는 전부 나열해 갖고.....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여기에 조례를 제정하는 거기 때문에 조례에 관련된 사항만 개정하는 거고, 여기 이게 개정이 되면 앞으로 하위법령엔 규칙이라든가 훈령은 여기에 따라서 전부 개정이 됩니다.

● 이기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제 의견은 부칙이라는 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느 위원회이고 다 상응한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게끔 하고서 각 위원회에서 수당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비변상에 대한 문구를 바꿔주면 되는 애기지, 여기 8개만 있으면 나머지 33개에 대해서는 각 위원회에서 수당을 주게끔 되어 있는 애기인데 그건 조례만 봤을 때는 그런 인상을 주게끔 되어 있어요.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하위법령이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할 수 없어 가지고 조례만 부칙으로 개정을 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 이기수 위원

아니면 그러면 이 부칙까지 해 갖고 다 통과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조례로 한다면 이 부칙까지 다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는지 한다면 전부 승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뒤에 부칙에 의해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보상지급에 관한 조례 뒤에 부칙까지 몽땅 다 들어 갖고 승인되는 애기지 앞에 것만 승인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부칙에서 있는 거와 같이 각 위원회별로 어느 위원회 어떻게 한다 어느 위원회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고 조례에 대해서도 수정하고 말입니다.

이중으로 할 필요 없이 이거는 부칙은 없애고 앞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조례로 제정해 놓고서, 각 위원회별로 수당과 여비를 줄 수 있는 항을 전부 수정해 갖고서 맞게끔 이렇게 고쳐 나가는 것이 모든 면으로써 맞는 애기 같지, 앞에 놓고서 뒤에 부칙에다가 말입니다. 위원회 몇 개 위원회 8개만 해 갖고서 그렇게 고칠 필요가 있는냐는 애기죠.

● 총무과장 이상기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이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또 연관성 있는 것은 우리가 법 제정형식에 비추어서 우리가 이 여덟 가지를 전부 개정을 보완해서 개정 나열을 전부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와는 관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칙에 의해서 그 조항만 요번에 개정이 되면 나중에 개별 실비변상조항 내에 개정된 사항이 효력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간편성 또 그 다음에 법 제정, 법리제정 정신에 맞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부칙에 넣어서 실비변상을 개정을 해 놓으면, 다음에 우리가 다른 조항을 개정할 때는 개별조항으로 개정이 들어가고, 지금은 연관성 있는 거기

때문에 부칙에다 전부 개정을 통일시키면 간편하게 전부 다 통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번에는 이렇게 넣어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 이기수 위원

이 과장님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제8조 다음과 같이 한다 해 갖고서 거기를 말합니다. 위원회 출석과 같이 그 하나만 넣고 여기다 위원회 여기에 상응하게끔 이 조항에 따라 갖고서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한다 이런 걸 하나로 해 갖고서 더 많은 걸 함축해야지 어떻게 나머지 33개는 여기에 적용 안받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가 되죠.

● 총무과장 이상기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여기에는 아까 관리국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와 연관된 사항을 하고, 또 이것이 의회에서 최종 통과가 되면은 하위법인 규칙이나 훈령은 우리 자체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정비를 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지 여기에 따라 조례나 규칙과 훈령을 다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 이기수 위원

이기수 위원입니다.

지금 관리국장님 말씀은 말입니다. 각 위원회가 41개중에서 8개가 비법정위원회

이고 33개가 법정위원회인데 그러면 나머지 33개 위원회 중에서 여기 일곱 내지 여덟 가지 위원회만 조례로 제정할 수 있고 전부는 훈령이나 나머지 규칙으로 정한 위원회입니까? 그게 다

● 총무과장 이상기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그것은 아니고 여기 비법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꼭 훈령이나 규칙으로 제정된 것이 아니고, 법정만 그거는 각 상위법 그러니까 교육자치법이라든지 초등교육법이라든지 그 법에 의해서 보면은 교육과정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또 그 다음에는 무슨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지, 꼭 거기에는 위원회를 설치했다고 해서 각종 수당이나 일비나 또 그 다음에 여비를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 조례로 된 조항들은 수당과 출석수당과 여비를 등등 다 줄 수 있는 것이죠.

그 나머지 아까 33개에 대해서는 다 위원회 일비 다 지급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떤 법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규정에 의해서 어떤 각종 위원회 만약에 교육과정심의위원회나 무슨 심의 이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은 구성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그런 입장 이거든요.

● 이기수 위원

이거 이외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위원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나머지 8개 이외에 지급할 수 있는

● 총무과장 이상기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그것까지 저희들이 파악이 안됐습니다.

● 위원장 송대현

됐습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지금까지 질의했던 요지를 간단히 상기시키기 위해서 잠깐 휴회할 적에 논의대상이 되기 위해서 좀 정리해 보면, 우선 이기수 위원님이 조례의 시스템, 체제에 대해서 체제의 모순점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명쾌하지를 못해요.

지금까지 객관적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들어봤을 적에 결국 지금까지도 각종 실비변상에 대해선 모법에 의해서 각종 위원회 및 변상을 그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정해서 각종 위원회가 정해서 실비변상을 해왔던 부분이거든요. 모법의 밑에 조례를 제정하지 않습니까?

또 조례 밑에 규칙이나 훈령을 제정하는데 지금 각 위원회가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하나 또 만드니까 조례와 조례의 상충점 때문에 지금 논의가 되는 겁니다. 각종 조례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모법에 실비변상 할

수 있다는 근간이 모법에 있어요.

그거에 의해서 밑에 하부조례를 만드는 데 이미 7개인가 8개가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놈을 목적대로 통일된 뭐를 만들려고 조례로 끄집어 내다보니까 지금 기존의 7,8개 조례와 새로 만드는 조례에 법리상에 체제의 상충이 일어나 가지고 과연 부칙으로 되느냐, 아니면 저쪽 것을 다 삭제해 버려야 되느냐, 또 이 부칙으로 같음해서 이걸 제정함과 동시에 부칙에 저쪽 것은 다 없어진 걸로 같음한다 이걸로 끝낼 수 있는 것이냐, 나머지 위원회는 어떠냐 이런 부분들이 명쾌하게 질의와 답변을 듣지를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 성영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료에 각종 위원회의 일목요연하게 내놓은 자료가 부족하다 이것을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런 부분도 대단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진옥경 위원님께서 지적한 자료의 부족과 더불어서 공무원들이 자기 소관업무 외에 할 때는 현재 실비를 받지 못하도록 제외된 규정을 이걸 묶어 가지고 여기에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이 자기 소관업무에도 수당을 받고 실비변상의 수당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지적도 있었고,

우리 이상일 위원님이 지적한 목적에

개정이유에 통일된다고 하는 그 의미하고 지금 실제 내용을 보면 통일되는 것이 수 당별로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한 개념의 내용이 전혀 맞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자료의 미비점을 지적을 해 주 셧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위원들이 조례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이 이루어졌다고 지금 보지 않거든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뒤에 더 논의를 하겠 습니다.

그래서 잠시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 위원장 송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송대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소 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 작성의 주관과장인 총 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

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상기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에게 적 용하는 여비조례를 교육위원회소속 지방 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근 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충청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 무원여비조례 중 제명 및 목적에 ‘충청북 도교육위원회’를 추가하고, 법제처의 법 령제명 띄어쓰기 실시에 따라 법령의 본 문 중에서 법령명을 인용하고 있는 법령 명 앞뒤에 낫표(「」)를 사용하여 본문의 다른 부분과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대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 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서는 신청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진옥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진옥경 위원

과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임시회에서 바람직한 조례제정 절차라 할 수 없으므로 부칙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그런데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예비조례를 단순히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예비조례로 제명을 개명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 당시 그렇게 올라갔고 그랬는데 이것이 도의회에서 수정가결되고 다시 도교육위원회에서 이것을 논의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상기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진옥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2004년도 10월에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바꾸면서 지금 현재 모든 조례제명에 공무원들과 관련되는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이렇게 넣어서 충청북도교육청과 교육위원회 직원을 통 털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육위원회가 빠지고 충청북도교육감소속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조례가 그래서 그때 당시 저희들

이 부칙에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이렇게 개정조항을 일부 넣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는 그때 당시 이것을 삭제하는 걸로 여기서 해당사항이 안 된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것이 취소가 됐죠.

그래서 요번에 우리가 다시 예비조례를 아주 별도로 그때 당시에도 부칙을 넣었는데 부칙에 교육감소속 예비조례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예비조례 이렇게 명칭을 넣었는데 그것이 거기하고 지방공무원복무조례하고는 연관성이 없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삭제가 되어서 개정이 안 되죠.

그래서 요번에 이것을 별도 조례안으로 해서 교육위원회를 앞에 추가해서 같이 통합되도록 요번에 상정하게 된 겁니다.

말씀을 드리면 그때 당시에 충청북도교육감소속복무조례를 개정하면서 부칙에다가 교육위원회를 추가해 가지고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공무원예비조례로 이렇게 수정을 개정하려고 했던 것이 그 복무조례하고 예비규정하고 연관성이 없다 그래서 그때 거기서 삭제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 안을 내서 개정하게 된 것이죠.

● 진옥경 위원

그러면 복무조례안에 예비조례가 들어



가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십니까?

● **총무과장 이상기**

아니 복무조례하고 예비조례하고는 그때 당시 견해가 별도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 **진옥경 위원**

별개다, 그러면 복무조례 안에는 예비는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상기**

예.

● **진옥경 위원**

전혀 안들어가 있습니까, 따로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상기**

별개 조례이기 때문에 연관성이 없어서

● **위원장 송대헌**

진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한 협의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정회)

(16시 03분 속개)

● **위원장 송대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학예에 관한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은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자료가 미흡하여 심의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제정이유에서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대하여 통일된 규정의 제정이 요구됨에 따라 제정한다는 이유와 내용 면에서 상충됨이 있어 좀더 신중한 심의가 요구되어 금번 회기 중에 심의를 보류하기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청 관계관계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

[제177회-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

0 출석위원 : 5명

위원장 송대헌, 간사 이상일,  
위 원 성영용, 이기수, 진옥경.

0 출석공무원 : 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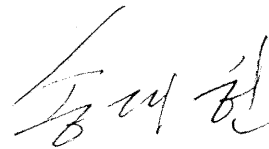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총무과장 이상기.

제17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조례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5. 4. .

위원장

송대현





(별첨 1)

##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제17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05. 3. 28. (월)  본회의 종료 후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05. 3. 29. (화)  14:00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